

「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민성 · 이정희 · 정지원 의원(3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 · 김영태 · 김원섭 · 소진혁 · 이상호 ·
이지연 · 장미경 의원(7인)

라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마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민 성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놀이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,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양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구미시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2주간 장난감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며, 기존 대여 서비스에 가정으로 장난감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.
-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,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방문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.
- 또한, 배달 대상 품목, 배달 지역 등 배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배달과정에서 장난감의 파손이

나 분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, 장난감 관리 및 반납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락

5. 토 론 요 지

- 추후, 사업 시행 시 ‘읍면동 전체 취약가정’ 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락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